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5 호
----------	--------

제출년월일 : 1996. 2. 22.

제출자 : 예산군수

□ 개정이유

-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국가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과 중복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것임.

□ 주요골자

-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를 예산의범위안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함 (안제2조)
-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제3조)
-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제4조)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회계 12500-2260 '95. 12. 26)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지방공무원 또는 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종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지방공무원 또 는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구 분한다.	(삭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
제3조 (국내여비정책)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 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 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중 '전문직 공 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료를 초과하여 지 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신용카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는 매출 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받은 숙박료의 1할을 넘지 못한다.	(삭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
제4조 (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현 행	개 정 안
<p>②~③ (생략)</p> <p>제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국내여비 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p> <p>(별표2) 여비정액표</p> <p>제6조 (현장지도여비) ①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한다.</p> <p>제7조 (준용 기준)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한다)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삭제)</p> <p>※현지교통비 (1일 6,500원) 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 (4시간이상 10,000원, 4시간 미만 5,000원) 지급</p> <p>제3조 (국내여비규정의준용) 지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 제1항 ·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p>
	<p>4. [별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p>
(신설)	<p>제4조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제8조제항의 '소속장관'을 '군수'로 본다</p> <p>2. 제9조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p> <p>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p>